



제429회국회(임시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입양에 의한 친족에게 장기등 기증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 〉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909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입양에 의한 친족에게 장기등 기증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	2

I. 개요

1.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9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영호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9. 11.
- (3) 회 부 일 : 2024. 9.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양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양 아동 등의 장기를 직계존속·형제자매에게 기증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기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장치가 없어 악용될 위험이 있음.

특히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이식 대기자의 절박함이 맞물릴 경우, 아동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 심리적 압박 여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입양에 의한 친족에게 장기등 기증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기등(이하 “장기”)1) 기증자와 이식대상자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등).

- 현행법은 장기 기증자와 이식대상자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기증의 경우에 비하여 별도의 심사 장치를 추가로 두지 않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 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신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식대상자가 입양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장기 기증자와 이식대상자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법 제8조2)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입양이 장기 기증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된 자의 존엄 및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의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함.

□ 장기 기증은 이식대상자의 선정 방식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① 선정기준에 따른 기증: 기증자(사망자 및 살아있는 자)가 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3)에 따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4)의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해진 이식대상자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법 제26조제1항)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뇌사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의2.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4)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이식대상자의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①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두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이식의료기관 선정에 따른 기증: 기증자(사망자 및 살아있는 자)가 ‘이식의료기관의 선정’에 따라 정해진 이식대상자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법 제26조제2항5))

③ 지정 기증: 기증자(살아있는 자)가 ‘기증자의 지정’에 의해 정해진 이식대상자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법 제26조제3항6))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경우 입양된 자의 ‘선정기준에 따른 기증’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나, ‘이식의료기관 선정에 따른 기증’ 및 ‘지정 기증’은 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안 제26조제4항이 선정기준에 따른 기증에 예외를 두는 조항이기 때문임.

* 안 제26조제4항은 “(선정기준에 따른 기증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인)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식대상자가 입양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을 규정함.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구 및 제4조제1호 라목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리면 이식 시기를 놓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선정한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등록기관의 장·장기등기증자·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한다.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16세 이상의 장기등기증자와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하 생략)

□ 그러므로, 입양된 자의 ‘선정기준에 따른 기준’ 외의 장기 기증에 대하여서도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26조제4항의 자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식대상자가 입양에 의하여 장기등 기증자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후) “제1항 및 제3항7)에도 불구하고 이식대상자가 입양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또한 개정안에서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장기 기증에 대한 사항을 법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뇌사 판정기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위원회가 개정안에 따른 사항(특수한 경우의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7) 법 제26조제2항(이식의료기관 선정에 따른 기준)의 경우 이식의 시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이므로 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1) 개정안의 취지상 기증자가 살아있는 자로서 지정 기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정하며, 2) 미성년자를 친생부모 동의 등을 거쳐 입양하는 친양자는 입양된 자가 입양관계를 모르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친양자 입양은 개정안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장기 기증이 기증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양된 자가 사망자 또는 친양자이거나, 지정 기증이 아닌 유형의 장기 기증을 한다는 사유로 그 기증을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입양된 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증 중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함. 또한,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를 친생부모 동의 등을 거쳐 입양하는 등 일반 입양과 성격이 다르므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입양 관계가 알려질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이식학회) 법안에 찬성하며 특별한 이견 없음.

- (대한의사협회) 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미성년자 인권 보호 강화, 위장 입양을 통한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다만, 위원회 심의로 인한 이식 수술 지연 가능성과 추가적인 행정 부담 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509